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 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0443	www.angelshouse.co.kr
최초 등록일	2015. 06. 02.	
최종 등록일	2023. 12.31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대 표 번 호	1544-3183	팩 스 번 호	02-6499-2170
가맹사업부	영업부	전 화 번 호	02-558-008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805 호		
홈 페이지	www.angelshouse.co.kr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내·외국 기업 여부
4. 인수·합병 여부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의 최근 3 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8.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10.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의 연혁
3.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4.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5. 기타 가맹사업현황
6.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산정기준
7.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8.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9. 가맹금 예치기관
10.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8.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자문활동
4. 신용제공 등 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 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 본 정보공개서에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가맹사업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자
- 귀하: 당사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계약 체결을 위하여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가맹희망자

1. 당사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주)비지팅 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외 2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5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7.11.27.	2007.11.27.	김한수	1544-3183	02-6499-2170
	법인등록번호	110111-3794173	사업자등록번호		220-87-58015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름/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사용인 (대표이사)	김한수/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관 계	이름/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차녀 (임원)	김정연/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관 계	이름/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사용인	정구은/	비지팅엔젤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804호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임원)	(주)비지팅엔젤스 코리아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대표자 김한수	대표전화번호 02-1544-3183	대표팩스번호 02-6499-217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사외이사)	강인석	비지팅엔젤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서울시 서초구 23길41신반로제2지구아파트101동303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번호
			김한수	02-1544-3183	02-6499-2170

가맹사업법 상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서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 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나 회사를 말합니다.

3. 내·외국기업 여부

당사는 내국 기업입니다.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은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과는 별도로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4. 인수·합병 여부

당사는 정보공개서 직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은 없습니다.

5.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가 향 후 영위할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명칭· 상호·서비스표·광고 그 밖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방문천사 비지팅엔젤스는 가정방문 보살핌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명성 있고 신뢰받는 세계적인 시니어케어 전문기업입니다. 시니어케어 부문 29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 최고의 홈 케어시스템을 제공하여 어르신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비지팅엔젤스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상 호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OO점 (해당 지역명 표기)	
상표(서비스표)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6. 가맹본부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가.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및 별첨 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연 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년	2,685,920	994,783	1,691,136	4,802,533	360,861	565,975
2022 년	3,190,151	1,158,624	2,031,527	4,871,259	222,653	654,082
2023 년	2,992,324	905,976	2,086,347	5,319,967	150,540	100,916

나.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의 비지팅엔젤스 외에 비지팅엔젤스요양시설 및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은 매출액이 없어서 가.의 매출액은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관련 매출액입니다.

7.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한수	대표이사	2007. 7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대표이사
	김정연	이사	2007. 11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회계자금관리 및 가맹점관리
	정구은	이사	2014. 8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가맹점 관리
가맹사업	강인석	사외 이사	2007. 11 ~ 현재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이사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관련 임원					
-----------	--	--	--	--	--

8.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정보공개 직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 근	비상근	
2023 년 12 월 31 일	3	1	140

9.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 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호/이름	사업명(정보공개서등록번호)	기 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20080100285)	2007.11.~현재	방문형 노인 돌봄이 서비스 업종
가맹본부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요양시설 (20120100078)	2012.02.~현재	노인 돌봄이 시설 요양 서비스

10.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준비 중입니다.

II. 당사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 시작일: 2015. 6. 2.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가맹계약체결: 2016. 9. 22.

2.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연혁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김한수	2015.05~현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두꺼비빌딩 805 호

3.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대분류	소분류
	기타서비스	노인 주야간보호

4. 최근 3개 사업연도 말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전국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1년 12월 31일			2022년 12월 31일			2023년 12월 31일		
	전체	가맹점	직영점	전체	가맹점	직영	전체	가맹점	직영
전체	2	1	1	2	1	1	1	-	1
서울	1	1	-	1	1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1	-	1	1	-	1
강원	-	-	-	-	-	-	-	-	-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 개 사업연도 말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직전 3 개 사업연도 신규
개점·계약종료·계약해지·명의 변경한 가맹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시 점	연 초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 말
2021 년	2	0	0	1	0	1
2022 년	1	0	0	0	0	1
2023 년	1	0	1	0	0	0

6. 기타 가맹사업현황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 외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 분	운영주체	업 종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점 및 직영점 수		
					2021. 12.31.	2022. 12.31.	2023. 12.31.
가맹 본부	(주)비지팅엔 젤스코리아	방문형 노인 돌봄이 서비스 업종	비지팅 엔젤스	20080100285	98/2	109/2	109/2
가맹 본부	(주)비지팅엔 젤스코리아	노인 돌봄이 시설 요양 서비스	비지팅엔젤스 노인요양시설	20120100078	-	-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 기준

해당없음

당사의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을 추정할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0	년

9. 가맹지역본부(지사를 포함한다) 현황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10. 직전사업연도의 광고·판촉 지출 내역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당사의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와 관련하여 연간 광고 및 판촉비로 사용한 내역은 없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명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개인상품부	중구 남대문로 2가 9-1번지	02-2073-5412

☞ 귀하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은행)

항 목		내 용	비고
국민은행 계좌가 있는 사업자	매장 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은행(개인상품부)방문 → ③ 가맹 금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 받아 보관	
	인터넷 뱅킹 이용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인터넷뱅킹(www.kbstar.com) 접속 → ③ (기업서비스)클릭 → ④ (SOHO센터)클릭 → ⑤ (가맹금예치제도)클릭→ ⑥ (가맹점사업자)클릭 → ⑦ (가맹금예치금 예치)클릭 → ⑧ 가맹금예치 완료	
국민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		국민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실행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대리인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국민은행 가상계좌에 입금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입금을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이 필수입니다. 인터넷뱅킹 가입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불가능하여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III.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비	가맹본부	예 치	확정금액
보 증 금	가맹본부	예 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금액

가. 최초 가맹금

1) 귀하(신규 가입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최초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 역	금 액(단위: 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55,000,000원		
가맹비	가맹비	27,500,000원	기존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자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를 중복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면제 가맹점오픈 이후 반환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이행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점 후 반환될 수 없음
	초도물품비	2,200,000원		
	신규오픈준비비용	5,500,000원		
	신규지점집중지원	5,500,000원		
	마케팅지원	5,500,000원		
교육비	개점 전 교육비	8,800,000원		교육시작이후 반환되지 않음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2) 양수 가맹금

귀하(기존 가맹점 양수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양수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역	금액(단위: 원) (VAT 포함)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양수 가맹금	1. 가맹비 2. 최초 가맹점 개점을 위한 노하우 (매뉴얼 포함)의 대가	5,500,000 (일괄 적용)	기존 비지팅엔젤스 가맹사업자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를 중복하여 운영하는 경우 10%면제	가맹점 오픈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1. 개점 전 교육비	3,300,000		교육 이후 반환 안됨, 단 오픈 및 교육 전 해약 시 위약벌과 상계처리 후 반환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합계		8,800,000			

3)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맹점 양수자 포함)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없습니다.**

4) 예치 가맹금의 범위

귀하 또는 가맹점 양수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원/VAT 포함)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합계	55,000,000	8,800,000
가맹비	27,500,000	5,500,000
초도물품비	2,200,000	
신규오픈준비비용	5,500,000	
신규지점집중지원	5,500,000	
마케팅지원	5,500,000	
교육비	8,800,000	3,300,000

나. 최초 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귀하(신규가입자)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주야간보호 이용정원 20 인 시설기준/ 198 m² 기준/ 단위: 원/VAT 포함)

품 목	지급대상	금 액	면적 3.3m²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 고
총계		88,200,000	1,469,999			
인테리어	협력업체 (미정)	66,000,000	1,100,000	계약 시 개별 계약	설치 전 소요비용 공제 후 반환	
간판	직접구입 및 설치	2,200,000		가맹점사업자 가 직접구입 및 설치	-	
설비/ 집기	직접구입 및 설치	20,000,000			-	
인테리어를 가맹점사업자 직접 시공 시에는 시방서, 간판 디자인 시안, 기타 물품 구입 정보를 제공 및 관리 감독 비용: 3.3m²당 110,000원						

- ①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③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 ④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m² 기준으로 110 천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 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가맹계약 체결과 개점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벌

귀하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점을 개점하여야 하며 기간 내 오픈되지 않으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에 오픈일을 조정할 수 있다.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되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벌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 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벌
계약 체결 후 48시간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10%
계약체결 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30%
계약 체결 후 7일 이후 30일 이내	총 지급할 금액의 70%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총 지급할 금액의 100%

라. 가맹점 입지 선정의 주체 및 선정기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	-----------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코리아 프랜차이즈 전략기획팀에서 영업거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업 거점중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	--

마.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적정수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야 하며, 직원 및 요양보호사들이 당사의 경영방침 및 지시를 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교육 및 훈련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 및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당사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양보호사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니어야 한다.
- 4) 기타 교육에 대한 기준은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바.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 금전지급방법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기준 금액(단위: 원/VAT 포함)		지급시기
예치가맹금	신규 가입자	기존 가맹점 양수자	계약 체결 시 총 금액의 30%
	55,000,000	8,800,000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중도금	기타 대금의 30%	인테리어 시작 시
잔 금	기타 대금의 40%	오픈 전 3일전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가.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역	지급 대상자	금 액(단위: 원/VAT 포함) 또는 산정기준	반환여부 및 반환조건	지급기한 및 비고
로열티	영업표지 및 기타 지식재산권 사용 등의 대가	가맹 본부	월 로열티 20만원 (가맹점 개점 후 3개월간 로열티 지급을 유예한다)	매월 지급되는 소멸성 비용임으로 해당 사항 없음	최초 계약 잔금납입일로 부터 계산하며 매월 10일 납입
개점 이후 교육비	수시 교육	가맹 본부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실비로 반환 안됨	개별청구
	특별 교육	가맹 본부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가맹점사업자가 의뢰하여 개별적으로 실시될 경우에 실비로 청구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음	
	재교육	가맹 본부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교육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 분담비	판촉	가맹 본부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당사 부담이며 판촉물 제작 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임.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판촉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광고 분담비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가맹 본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부 부담(가맹본부 30%, 가맹점사업자 측 70% 분담 원칙) 될 수 있음	광고 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자연 이자	비용의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	가맹 본부	연 1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여서 반환 안됨	개별 청구
점포환 경개선 비용	간판 및 인테리어 시공 비용	계약자	가맹본부 분담 부분 제외 나머지 모두	발주 전 소요 비용 공제 후 반환	개별 청구

나.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해야하는 대가는 없습니다.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

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처리·재고관리 감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 감독하고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가. 계약연장이나 재계약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원/VAT 포함)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갱신비	2,750,000	계약연장(갱신) 후 10 일 이전	반환되지 않음	재 계약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나.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등의 종료 시 조치사항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가맹계약체결 의사가 없을 경우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을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당사가 사용을 허락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이를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사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가맹금 중 미 이행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가맹점사업자는 정보공개서 상의 양수가맹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부담 비용

귀하가 그 밖에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마.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1)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즉시 철거 내지 제거해야 하며 이때 철거 및 원상회복비용은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철거 및 원상 회복에 관한 확인서를 7일 이내에 당사에 제출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한다.
- 2) 온라인상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한 홍보물 및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상호를 포함한 영업 표지를 변형하거나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자세한 내역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년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본부에서 귀하에게 구입요구하는 품목은 없습니다.

3.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비지팅엔젤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4.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요구 또는 권장하여 그에 대한 알선 대가를 수수하는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판매상품의 비중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해당없음

6.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주야간보호 가맹사업자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관만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당사로부터 승인된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판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 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활동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1 회 서면 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 제한 또는 2 회 서면시정요구 후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의 해지 절차 준용

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가맹본부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가)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업종의 가맹점 및 직영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관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

나)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행정구역상 65세 이상 인구수 5,000명 기준	기존 가맹점 및 직영점의 여부, 독립상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합의내용을 별지 지도에 표시

다)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어 65 세 이상 인구수가 5,000 명 이상이 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 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마.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영업거점지역 외에 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거점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자기의 영업거점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지역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선전비 등 판촉비용에 상당하는 일정한 보상금으로 서비스금액의 10%를 지불하는 경우
- ② 해당 고객이 다른 영업지역에서 서비스를 받기를 선택하는 하는 경우 (즉, 고객은 서비스를 받을 영업지역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받은 가맹점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가맹점사업자가 타가맹점과 영업지역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는 중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중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노인요양시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사.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노인요양시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8. 계약의 기간, 갱신, 종료 및 수정, 해지 등

가. 가맹계약기간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가맹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다만,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나.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최대 10년의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③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④ 다. 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⑤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 내
⑦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⑧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⑨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⑩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갱신 시 계약기간 2년)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다. 계약 갱신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계약 갱신에 따른 갱신비용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7조 2항 각호
당사 또는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두렵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라.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1)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조2항 및3항	25조 각호 및 31 조 1항 1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조3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조4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조	
가맹점사업자가 개점이 후 교육에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16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7조1항 및2항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 명의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3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20조1항	
가맹점사업자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동일성 유지를 위한 요구 품목을 사용하지 않아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저해하는 경우	21조2항~4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사전협의 없이 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1조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조9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하거나 품질검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조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거나 영업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26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시설 보수를 거부하는 경우	27조2항및3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조6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통지 등의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28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의 광고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판촉활동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30조2~5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판촉물 등을 제작하여 가맹사업의 동일성 및 이미지를 훼손하	30조7항	

비지팅엔젤스주아간보호

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35조1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조21호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조1항2호	

2)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1)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2)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3)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약정해지 사유 위반으로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1조 4항 각호

3)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1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여한 영업지역에 부당하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2 개월 전에 당사에게 계약 해지의 내용을 통보하고 당사가 제시하는 합의 해지서를 작성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당사의 영업표지 및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를 나타내는 간판 시설물 등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한다.

마. 계약 수정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180 일에서 90 일 사이에 계약의 변경 조건을 통지하고 재 계약 여부를 묻게 됩니다.

9.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가.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및 상속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잔여기간에 대한 양수 또는 신규가맹계약 조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 ① 양수인은 잔여계약 기간에 대하여 가맹점운영권이 인정되며, 양수에 따른 교육이수 및 정보공개서상의 양수인의 부담비용(정보공개서상의 양수가맹비 등 부담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가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영업 상속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승인을 얻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본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점운영권의 대행,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당사에 사전 통보하고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행 및 위탁자는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 하여야 합니다.

10. 경업금지, 영업시간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나. 경업금지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자신 및 제 3 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 없이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와 동종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을 경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계약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지되는 경업금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기관

다.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24시간	연중 무휴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 ③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권장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 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 근무 여부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라.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11.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가. 당사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광고(브랜드광고, 제품광고 등을 포함한다)를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공동광고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30%	광고비의70%/가 맹점사업자수	광고 계획 공고→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가맹점부담액 통지(광고1개월 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납입
	상품광고 등			
	가맹점모집광고	100%	-	-
공동판촉	행사에 따라 달라짐	기획비용부담	제작비용부담	행사 계획 공고- 가맹점 부담액 제시- 행사에 따른 분담금 납입
		기획, 제작 비용 이외는 협의		

☞ 공동광고는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별개로 광고·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2.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가 제공한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이나 계약종료 후에도 제 3 자에게 어떠한 목적으로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그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의 의무위반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관리감독상의 의무는 본 계약의 성립시점부터 종료한 후 3 년이 경과되는 날까지 지속됩니다.

13.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개점 전 해약에 따른 위약벌

가맹점 가맹점 오픈 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점일 이전 해약하고자 할 경우,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최소 개점일의 7일 전까지 문서로써 그 취지를 예고하고 즉시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계약서
① “을”이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 30 조(비밀유지의무), 계약 기간 중 제 31 조(경업금지 의무) 제 48 조(가맹점 운영권 소멸)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 삼천만원(₩30,000,000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후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기타 표시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금 이십만원(₩200,000원) 씩 상표권 침해에 대한 위약별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해지·중단·폐업 처리하거나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금일천백만원(₩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1 조

14.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지연이자

1) 가맹점사업자가 규정된 금전지급의무 또는 위반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 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경과 시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 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이

을 10%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2) 미지급채무 총당은 이자, 원금의 순으로 먼저 발생한 채무부터 우선 총당한다.

15. 당사 또는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55 일 정도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정원 20 인 시설기준/198 m² 기준)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비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2051-6692~3). 방문 - 인터넷 홈페이지	-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이전 부담 금전지급 방법 참조
1 차 상담	- 전화상담/본사방문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정보공개서 사항 검토 -가맹계약서 검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인근 10 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14 일 이후 계약체결	
가맹 계약 및 계약금 지급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 부 교부 보관	1 일	
점포 계약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15 일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 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면적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3 일	
도면 작성	- 인테리어/별도/추가공사 도면협의	5 일	
인테리어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실시	35~55 일	
교육	- 교육 - 종업원, 점주교육	1 일	
오픈	오픈 담당자 판단 후 오픈 결정 오픈	D-day	

☞ 상기 일정은 개별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 일 후에서 7 일 후로 단축됩니다.

2. 분쟁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점포환경개선은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40%
지급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 부담 제외 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가맹점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시에 가맹본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지원항목,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의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은 통상적인 가맹본부의 가맹점관리, 교육, 통제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경영활동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계약에 의하여 협의로 결정이 되며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별도의 신용 제공 등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용 제공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가.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나.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훈련의 최소 이수해야 할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훈련에 미 참여 및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오픈 연기 및 지연될 수 있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원/VAT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5일 (40시간)	8,800,000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 교육	개별협의	기본 교육 무료, 특수 사항은 실비 청구	필요 시 실시
특별 교육		개별 교육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산정	
재 교육		일정 자격 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 및 종업원(요양보호사)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 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일산동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1로 6-70 5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 평균 운영 기간	비고
7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2023년 직영점 평균 매출액	비고
830,867	

끝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가맹사업팀(02-1544-3183)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visitingangels.co.kr]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2023 년,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손익세산서(2023 년, 2022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
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
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증

“본인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의 『비지팅엔젤스주야간보호』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히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 및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정보공개서 등 제공일:

년 월 일

정보공개서 등 수령자:

서명(또는 기명날인)

수령자 주소:

전화/휴대폰:

(주)비지팅엔젤스코리아:

서명(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 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중인 가맹점이 10 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겠습니다.

구분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별첨] 점포 현황 (2023. 12. 31. 기준)

(1) 직영점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